

2024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 보고



성 북 구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보고

의안 번호	427
----------	-----

제출년월 : 2025년 3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 2024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개요

1) 구성인원 및 임기: 3명 / 2년 (1회 한정 연임 가능)

※ 위촉일(재위촉) : 2024. 05. 26.

2) 운영형태 : 독임제 + 합의제

3) 운영방법 : 주 3회 순환근무 (1일 1명, 3시간)

가. 주요기능

1)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제고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

2)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등의 권한 행사

다. 운영보고서 : 별첨

1) 옴부즈만 제도 소개 (고충민원의 개념, 직무 및 권한 등)

2) 옴부즈만 운영 성과 (고충민원 처리 현황)

- 2024년 성북구 옴부즈만 민원처리 : 20건 (시정권고 2건, 의견표명 1건, 심의안내 1건, 부서이첩 16건)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